

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29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10. 8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10. 11
- 라. 상정일자 : 2010. 10. 27(제188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)
 - 제안설명 : 건설교통국장 백은기
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교통안전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·시민·공무원 등에 대하여 우리시가 관리하는 교통전문기관인 교통연수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,
- 용어의 정의 등 필요한 규정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운수종사원 교육 외 교통안전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교통취약자(어린이, 노인 등) 및 시민,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(안 제1조, 안 제3조)

- 교통연수원의 업무에 “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”을 신설함(안 제4조제5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과 시민, 공무원 등 맞춤형교육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주요 개정내용은 운수종사자 외에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교통사고 취약계층과 시민,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연수원의 업무에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현 교통정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제도강화 등 교통취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과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다양한 계층에 교통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.
- 따라서 동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교육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질 의>

- 안병배 의원
 - 교육이 늘어나면 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가?
- 류수용 의원
 - 시민들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인가?

<답 변>

- 백은기 건설교통국장
 - 시비보조 및 임대수입등으로 부담하고 있음
 - 시민들의 교육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김병철, 이도형, 정수영, 안병배, 류수용, 이성만, 제갈원영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7 찬성 : 7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타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조문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시민,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연수원”을 “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”로, “계산동 758-1번지”를 “경명로 552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조례에서 “운수종사자”라 함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, 운전자,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.
2. “시민”이라 함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, 사업장종사자 등을 말한다.

3. “공무원”이라 함은 시 및 군·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
제4조 각 호의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여 같은 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

제5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시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」에 의한다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시민,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(위치) 연수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758-1번지에 둔다.</p>	<p>제2조 (위치)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----- 경명로 552-----.</p>
<p>제3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과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, 운전자,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.</p>	<p>제3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조례에서 “운수종사자”라 함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, 운전자,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. 2. “시민”이라 함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, 사업장종사자 등을 말한다. 3. “공무원”이라 함은 시 및 군·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<p>제4조 (업무)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〈신설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기타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	<p>제4조 (업무)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6. 그 밖에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

현행	개정안
<p>제5조 (연수원의 운영) 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<u>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의 보조금 및 <u>기타</u> 수입으로 운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 (준용) 연수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「<u>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</u>」에 의한다.</p>	<p>제5조 (연수원의 운영) ①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 (준용) 연수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「<u>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</u>」에 따른다.</p>